

한국알콜산업그룹 정도경영 뉴스레터

발행일 2017년 7월(분기발행, 제1호) / 발행처 준법경영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 14, 031.881.8019)

임직원 여러분!

오늘날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윤리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기업들은 윤리경영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알콜산업그룹도 이러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도 1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영의 원칙으로 '정도경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고와 행동의 원칙이 되는 7대 행동강령을 규정한 '정도경영 헌장' 선포, 정도경영 운영 조직을 구성, 정도경영 운영규칙, 정도경영 행동규정, 정도경영 신고자 보호 보상규칙 등 관련 제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정도경영의 초기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창간되는 정도경영 뉴스레터는 우리의 정도경영의 이념과 대내외 윤리경영 관련 소식을 공유하고, 정도경영 실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도경영 뉴스레터 발간을 계기로 정도경영에 대한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이를 통해 고객, 주주, 협력회사, 임직원으로부터 한층 더 사랑 받고 신뢰 받는 기업이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일조하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7년 7월

회장 지용석

한국알콜산업그룹의 정도경영 체계

[정도경영 관련규정]

한국알콜산업그룹의 정도경영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고와 행동의 원칙이 되는 7가지 행동기준을 담은 '정도경영 헌장'을 최상의 규범으로 하여 정도경영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하여 모든 조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정도경영 행동규정', 조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 정도경영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도경영 운영규칙', 정도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상규칙' 등 3개 하위 세칙으로 이루어진 규정들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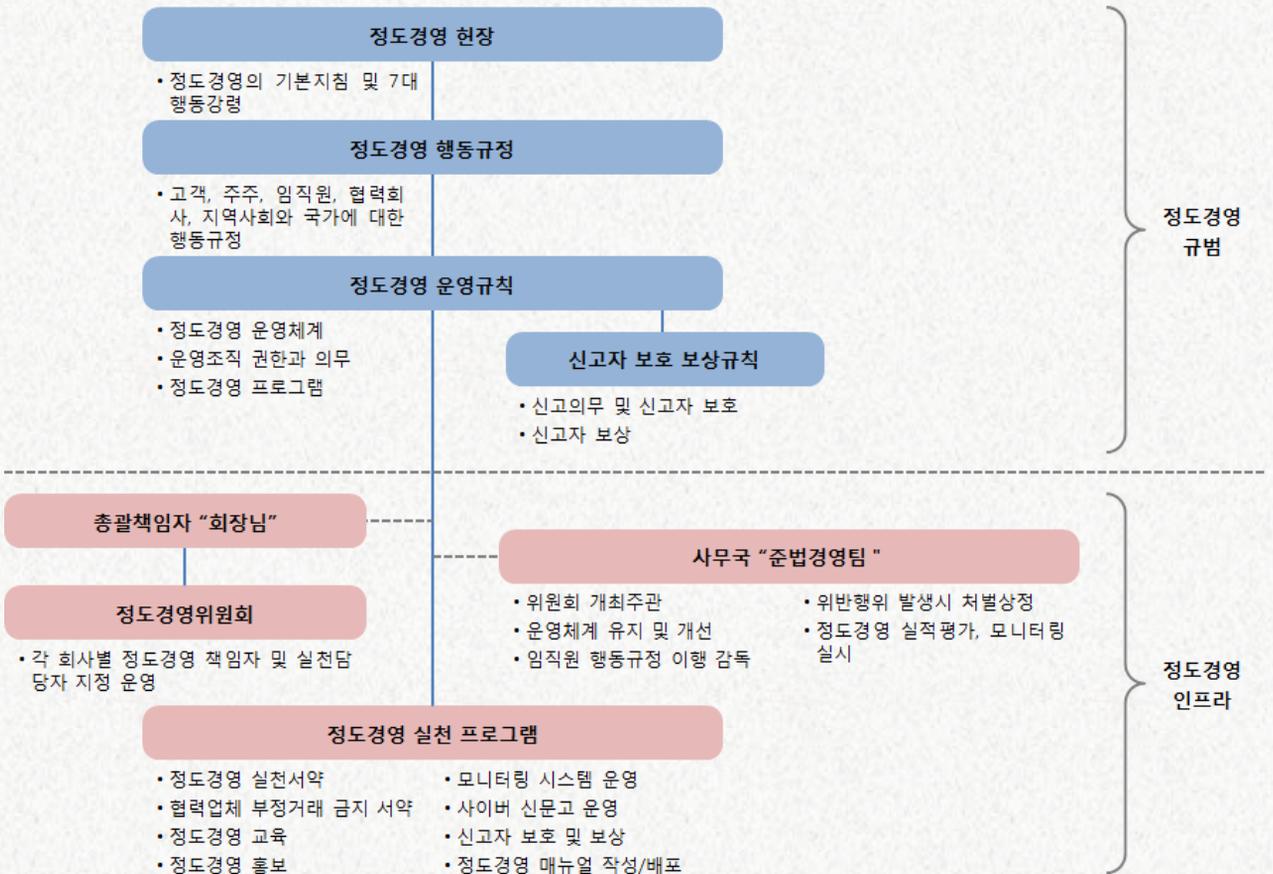
[정도경영 인프라]

회장님을 정도경영 운영의 총괄책임자로 하여, 직속으로 편성된 정도경영위원회를 통해 그룹 각 사별 정도경영 실천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준법경영팀은 정도경영 운영 실무 조직으로서, 위원회 개최, 위반행위 발생시 처벌상정, 운영체계 유지 및 개선, 정도경영 실적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임직원 행동규정 이행 감독 등 실무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인프라 아래 정도경영 실천서약, 모니터링 시스템운영, 사이버 신문고 운영, 정도경영 교육,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정도경영 홍보, 정도경영 매뉴얼 작성/배포 등 구체적인 정도경영 실천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도경영 추진 체계



윤리경영 기업사례 보기

윤리적 기업은 항상 윤리적일까? 윤리경영 교육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기업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항상 윤리적/비윤리적인 것일까요? 윤리적/비윤리적 기업의 대명사처럼 제시되는 기업들의 행보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기업의 잘못된 선택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사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CS 등 여러 분야에서 주목하는 긍정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들도 항상 윤리적인 대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1982년, 타이레놀 사건

1982년 9월, 시카고에서 청산가리가 주입된 타이레놀을 먹고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존슨앤존슨은 사망원인과 타이레놀의 관계를 부정하는 대신 미국 전역의 타이레놀을 리콜합니다. 수사결과, 범인이 슈퍼마켓과 약국에 진열된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주입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을 면했지만, 존슨앤존슨은 재발방지를 위해 타이레놀의 포장을 바꾸어 재출시 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그들의 모습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타이레놀은 6개월 만에 시장점유율을 거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타이레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다

1989년, 타이레놀 과다 복용이 간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드러나자 존슨앤존슨은 피해자들로부터 설명 불충분을 이유로 고소를 당합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재판에서 패소하고도 소비자가 적당량을 복용한다면 타이레놀은 가장 안전한 제품이라고 강조하는 광고를 내보냈을 뿐, 책임은 외면합니다. 또, 2009년과 2010년에는 제품 오염 문제로 수차례 리콜이 진행되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오염된 제품에 대한 문제를 알았음에도 FDA 조사 이후에야 리콜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업

‘네슬레’는 분유사업을 시작으로 제품군을 늘리며 성장했지만 분유로 인해 위기를 맞이합니다.



▶ 네슬레와 시민단체

1970년대, 네슬레는 개발도상국에서 분유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분유 타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 영어를 모르는 엄마들은 소독되지 않은 병에 오염된 물로 분유를 타 먹었습니다. 심지어 비싼 분유값을 아끼기 위해 분유를 아주 묽게 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의 아기가 설사, 이질, 전염병, 영양실조로 죽어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분노했지만 네슬레는 이를 사소하게 여겼고, 그 결과는 네슬레 전 제품에 대한 10년에 가까운 전 세계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네슬레는 1981년이 되어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WHO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약속하며 이를 감독하는 ‘네슬레 이유식감사 위원회’를 만들어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1984년, 대부분의 단체는 불매운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네슬레가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인도네시아 팜오일 공급업자들과 비윤리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비판하며 네슬레의 키캣 광고를 패러디해 일상에 지친 남자가 키캣 봉지를 뜯어 오랑우탄의 손가락을 먹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네슬레는 이 영상을 삭제하는 것으로만 대응하여 다시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성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네슬레는 그제야 팜유 공급자를 교체하였습니다.

비윤리 기업의 재도약

1847년 설립된 지멘스는 독일의 국민기업이었지만 부패스캔들을 일으키며 신뢰를 잃었습니다.

▶ 지멘스의 부패스캔들

2006년 11월, 독일 지멘스에서 4억 6000만 유로에 달하는 비자금의 뇌물로 제공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멘스에 부과된 벌금과 합의금은 3조 원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준법을 위한 조직과 정책, 절차가 있었지만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문화와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멘스는 신뢰 회복을 위해 먼저 기존 경영진중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을 교체하였습니다. CEO까지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세계 각국 지사의 감사조직은 독일 본사 중앙부서로 집중되었고, 재무장관 출신의 외부 감시인이 임명되었습니다. 준법감시인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준법 교육은 관리자의 책임으로 넘어갔습니다. 관리자에게 교육을 받자 직원들도 준법 교육에 대한 무게감을 달리 느꼈습니다. 지금도 지멘스는 자신들의 부패 스캔들을 숨기는 대신 대내외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그 때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http://acrc.imgwill.com>)

국내외 반부패 법률 소개

많은 국가에서 법률로서 뇌물, 리베이트 기타 부정 지급물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의하거나, 심지어 받는 경우도 이들과 직원 개인에게 벌금 및 징역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부패 법률의 특징은 바로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은 법위반 직원과 소속 회사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한국의 반부패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의 FCPA 관할권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메시지, 이메일, 송금 행위 중 하나만 발생해도 미국 정부

정부는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는 한국 기업 역시 계약 관계에서 FCPA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FCPA의 적용 주체는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이며, 각각 반부패규정과 회계규정 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부패규정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국적자, 거주 외국인, △미국에서 설립되었거나 주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해외기업,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을 뇌물제공자로, 회계규정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을 뇌물제공자로 규정합니다.

이들 뇌물제공자에 대하여는 반부패규정 위반 법인의 경우 최대 200만달러의 벌금, 개인 및 대리인의 경우 최대 10만 달러 벌금 또는 징역 5년형이 부과되며, 회계규정 위반 법인의 경우 최대 2,500만달러의 벌금, 개인의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 20년형이 부과 됩니다.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미국 FCPA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기업 외에도 영국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FCPA와는 달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영국 내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뇌물의 수수와 공여 모두 금지하고 있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특히 미국 FCPA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소정의 급행료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뇌물방지법의 적용주체는 영국 법무부입니다. 적용대상은 뇌물규제 위반행위이며, 뇌물제공자와 뇌물수수자 모두를 처벌합니다. 뇌물제공자의 요건은 △영국법에 근거해 설립됐거나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이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 또는 이와 관계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뇌물제공자 또는 수수자에 대하여는 개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상한 없는 벌금형이 부과 되고, 법인의 경우 상한 없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기업이 뇌물제공방지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상한 없는 벌금형이 부과 됩니다.



한국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지난해 9월부터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국내의 대표

적인 반부패법률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자 배우자 포함 조항 등 4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적용범위에 대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있기도 하였으나 공직자 등에 대한 반부패 정서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청렴법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시행된 법률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청탁과 금품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직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학교법인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부정청탁의 유형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청탁하는 경우,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제3자를 통하여 청탁하는 경우, △공직자 등이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청탁하는 경우, △일반인이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청탁하는 경우, △본인, 제3자의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경우로 구분되며 각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최소 1천만 원(자신의 사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제3자를 통하여 청탁하는 경우)에서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형(본인, 제3자의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이 부과됩니다.

금품수수행위의 경우 수수금액에 따라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문가 칼럼



기업윤리와 도덕적 해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동엽

Q1

도덕적 해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조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도덕적 해이는 자신이 아는 정보를 이해관계자인 상대방은 모르는 정보비대칭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숨기거나 왜곡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회사 경영상황이 심각한데도 숨기고 외부에서 유리하게 자원을 조달하는 행위가 예이다. 둘째는 상대가 자신을 관찰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업무과정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활용해 근무시간에 개인적 용무를 보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즉 도덕적 해이는 개인의 근무태도 같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기업이 주주나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은 큰 행동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공공기관의 장이 국민들이 자신의 행동을 감시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다.

도덕적 해이는 기업은 물론 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정보는 숨기기 때문에 회계나 인사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자기 부서 생산물의 불량을 감추므로 생산 활동이 타격을 입게 되며, 기업 내부의 불리한 정보를 숨기고 외부에서 자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된다. 조직의 기본인 업무 분장이나 위임도 조직목적보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불가능해진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가 되더라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 기업은 망하는데 경영진은 부자가 되는 현상도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발생한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 때문에 상대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회주의적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상세한 계약서를 매 거래마다 작성해야 하므로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

Q2

조직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도덕적 해이의 극복에는 다음 3단계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도덕적 해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부정은 도덕적 해이로 이해하지만 소액의 공공처리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액수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 관련 정보와 행동의 일관성이 관건이다. 글로벌 보험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한 직원이 워크숍을 준비하다 원래 예산안에서 남은 다과비를 음료비로 대체해서 사용했는데 몇천 원 단위의 소액이어서 보고

는원래 예산안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했다. 그런데 감사팀에서 실제 있었던 일 그대로가 서류에 표기되지 않으면 액수나 의도에 상관없이 부정이라고 중징계했다.

둘째, 도덕적 해이의 극복을 위해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처벌에 의존하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또한 모든 사람의 행동이 항상 감시받는 사회는 윤리적인 이상향이 아니라 360도 모든 방향에서 항상 감시가 가능한 완벽한 감옥인 파놉티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의 바람직한 극복방안은 구성원들의 자율적 윤리의식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적발되는 경우에 대한 강한 사후적 제재를 결합하는 선진국형 접근일 것이다.

셋째, 신뢰기반 사회의 정착이 도덕적 해이 극복의 궁극적 답이다. 구성원들을 잠재적 도덕적 해이자로 보고 철저하게 감시 통제하면 오히려 기회가 오면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게 되는 불신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반면, 구성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 믿고 감시 없이 맡겨놓으면 궁극적으로는 알아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신뢰의 선순환도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제도설계에서 신뢰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신뢰기반 조직과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 극복의 궁극적 해결책일 것이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http://acrc.imgwill.com>)

한국알콜산업그룹 정도경영 활동

2017년 상반기(1월~6월) 정도경영 추진사항

▶ 정도경영 기틀 마련

정도경영 선포(회장님 취임식 및 비전 선포식 中)



지난 1월 회장님 취임식 및 비전 선포와 함께 향후 한국알콜산업그룹이 나아가야 할 경영의 원칙으로 작용할 정도경영 선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정도경영 총괄 책임자인 회장님의 정도경영 헌장 수여식, 정도경영 사무국인 준법경영팀 이상기팀장의 정도경영 헌장 낭독식의 순서로 진행되어, 정도경영을 경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전사적 의지를 전 임직원에게 공히 천명하였습니다.

▶ 정도경영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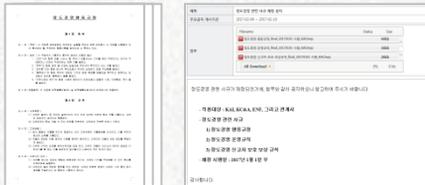
상반기 신규입사자 대상 정도경영 교육



2017년 상반기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정도경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2016년 및 2017년 상반기 신규입사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경영팀 이상기팀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정도경영 사무국에서는 정도경영의 성공적인 내재화를 위하여 신규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정도경영 관련규정 제정 및 사규화



정도경영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정도경영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사규화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모든 조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정도경영 행동규정', 조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 정도경영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도경영 운영규칙', 정도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보상규칙' 총 3가지로, 향후 정도경영 사무국에서는 우리의 정도경영 운영 현실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력회사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 수취



한국알콜산업그룹 정도경영 정책의 취지와 정신을 알리고, 정도경영 실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사의 주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를 수취하였습니다. 협력회사는 우리의 브랜드 가치와 경영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하고 공유하는 관계로서 대리점, 협력회사 등을 말합니다. 협력회사 대상 서약서는 매년 1회 주기로 수취하여 당사의 정도경영 실천 의지를 지속 전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7년 하반기(7월~12월) 정도경영 추진계획

▶ 정도경영 확산

조직원 대상 정도경영 실천서약서 수취

정도경영 사무국에서는 7월 중 한국알콜산업그룹 전 계열사 조직원을 대상으로 정도경영 서약서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정도경영 서약은 정도경영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도경영 정신에 입각하여 조직원들이 직무수행 중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 조직원 실천서약서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도경영의 정신을 이해하고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회사의 경영 원칙, 핵심가치, 비전과 미션 등 가치체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하겠습니다.
2. 회사의 제규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3. 정도경영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4.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음담, 향응, 접대 및 편의 등 부적절한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묵인 하지 않겠습니다.
5. 정도경영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지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6. 회사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7. 회사의 영업비밀 및 회사로부터 접근 허가가 되지 않은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8. 각종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직무 태만, 관리 감독 소홀, 월권행위, 불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10. 정도 경영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나 회사의 제규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 정도경영 관련 시스템 정비

사이버신문고 오픈



하반기 기업홈페이지 리뉴얼에 맞추어 사이버신문고를 오픈하여 정도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채널을 다양화 할 예정입니다.

사이버신문고는 한국알콜산업그룹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자는 누구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정도경영 신고자 보호 보상규칙에 따라 철저히 그 신원이 보장됩니다. 정도경영 사무국에서는 사이버신문고의 운영 주관부서로서 향후 사이버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각종 제보 및 건의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